|  |  |  |
| --- | --- | --- |
| **환경 행정 집법 후 감찰방법**  환경보호부부령 제 15호  《환경 행정 집법 후 감찰방법》을 환경보호부의 2010년 제2차 부무회의를 거쳐 2010년 11월 5일자로 심의 비준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공포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주생현  2010년 12월 15일  **제1조** 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이라 칭하며, 환경보호주관부서가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 처벌, 행정 명령 등의 구체적 행정 관리 조치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행정관리 조치를 가리킨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 집행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혹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집행한 환경행정 처벌 및 행정 명령 등의 구체적 사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환경감찰기구가 구체적인 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을 실행한다.  환경보호부서가 법에 따라 실행한 환경행정처벌 및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환경보호부서가 파견한 환경보호감찰기구에 위탁하여 구체적인 행정 법집행 후 감찰 책임을 진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업무를 환경행정법 집행업무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엄중한 환경오염을 조성한 환경법 위반 안건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후속 감찰업무 방안을 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환경행정 처벌 및 행정 명령 등의 구체적 집행 행위의 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  (1) 과태료, 생산 중지 및 시정 명령, 영업중지, 폐쇄처분, 위법소득압류, 불법 재산 압류 등 환경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상황.  (2) 시정 혹은 기한 이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기한 이내 오물배출부과금 납부명령 등 행정명령의 집행사항.  (3)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의 집행상황.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 시 집행 인원(이하 “감찰원”으로 통칭) 이 2명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업무 필요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진행 관련 장소의 진입하여 감찰, 녹음, 사진촬영, 녹화, 표본조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2) 당사자와 관계자를 질문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3) 열람, 생산기록부 복사, 폐기물 기록,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사한다.  (4) 법에 따라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찰원은 현장조사 상황에 대한《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 현장조사 기록》을 제작해야 한다.  감찰원은 조사 중 획득한 피감찰 기업의 기술 및 사업의 기밀사항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제8조**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 업무 종료 후 구체적 후속 감찰업무를 담당한 기구는 본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 법집행 상황과 후속 감찰의 전개 상황, 발견한 문제점 등을 보고하고 처리 건의서를 제시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 보고》에 근거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 및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1) 기한 내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한다.  (2) 기한 내 요구에 따라 시정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생산 중지, 영업중지, 폐쇄처분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3) 기한 내 요구에 따라 환경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청구하며,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허가증의 압류 및 무효화 등 행정처벌 시행하고, 건설 중지 명령, 생산중지 명령, 강제 철거, 시정능력이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대리 시정 및 대리처벌 등의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한다.  (4) 기한 내 오물배출 부과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 생산 및 영업 정지 시정명령을 내린다.  (5) 기한 내 본 방법 제6조에 열거한 행정 처벌, 행정 명령 등 구체적 행정 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고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 감독을 진행하거나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심사비준을 중단한다; 이미 공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거나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심사비준을 중단한 경우 해제 처리를 하지 않는다.  (6) 국유기업 및 국유지주기업이 기한 내 본 방법 제6조에 열거한 행정 처벌, 행정 명령 등 구체적 행정 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감찰기관을 이송하고 관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규명한다.  (7) 당사자나 관련 책임자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고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 상황 및 관련처벌 혹은 처리상황을 상무부, 공상부, 감찰기관, 인민은행 등 감찰직책을 가진 부서 및 기구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그 직책범위 내에서 환경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을 거부한 기업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후속 감찰원은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 과정 중 직무소홀,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탐하는 등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분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고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13조** 하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행정처벌 및 행정명령 등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상급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상황에 대해 후속 감찰하고 감찰 상황, 진행에 대한 문제점, 처리 의견 등을 즉각 하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하급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처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 시 상급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관련 지역의 인민정부에 진행 상황의 피드백을 진행하거나 기율검사(紀檢)감찰기관과 연합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규명한다.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을 진행하는 경우구체적 행정행위의 집행 기한 만료 후 진행해야 하며, 이는 본 방법 제 5조 규정의 60일 기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본 방법은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环境保护部部令第14号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已由环境保护部2010年第二次部务会议于2010年11月5日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3月1日起施行。  　　 环境保护部 部长 周生贤  　　 二○一○年十二月十五日    **第一条** 为了规范环境行政执法后督察工作，提高环境行政执法效能，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环境行政执法后督察，是指环境保护主管部门对环境行政处罚、行政命令等具体行政行为执行情况进行监督检查的行政管理措施。  **第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组织实施环境行政执法后督察。  　　对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其环境保护主管部门依法作出的环境行政处罚、行政命令等具体行政行为，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的环境监察机构负责具体实施环境行政执法后督察。  　　对环境保护部依法作出的环境行政处罚、行政命令等具体行政行为，可以由环境保护部委托其派出的环境保护督查机构负责具体实施环境行政执法后督察。  **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将环境行政执法后督察纳入环境行政执法工作计划。  　　对有重大影响或者造成严重污染的环境违法案件，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制定后督察工作方案，并组织实施。  **第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环境行政处罚、行政命令等具体行政行为执行期限届满之日起60日内，进行环境行政执法后督察。  **第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对下列事项进行环境行政执法后督察：  　　（一）罚款，责令停产整顿，责令停产、停业、关闭，没收违法所得、没收非法财物等环境行政处罚决定的执行情况；  　　（二）责令改正或者限期改正违法行为、责令限期缴纳排污费等环境行政命令的执行情况；  　　（三）其他具体行政行为的执行情况。  **第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进行环境行政执法后督察时，执法人员（以下统称“后督察人员”）不得少于两人，并可以根据工作需要，依法采取下列措施：  　　（一）进入有关场所进行检查、勘察、录音、拍照、录像、取样或者监测；  　　（二）询问当事人和有关人员，要求其对相关事项作出说明；  　　（三）查阅、复制生产记录、排污记录、监测报告和其他有关资料；  　　（四）依法可以采取的其他措施。  　　后督察人员应当对现场检查情况制作《环境行政执法后督察现场检查记录》。  　　后督察人员有义务为被督察的单位保守在检查中获取的技术秘密和商业秘密。  **第八条** 环境行政执法后督察工作结束后，负责具体实施后督察工作的机构应当向本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提交《环境行政执法后督察报告》，报告具体行政行为执行情况、后督察开展情况、发现的问题等，并提出处理建议。  **第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根据《环境行政执法后督察报告》提出的处理建议，依法进行处理或者处罚：  　　（一）逾期未依法履行行政处罚决定的，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二）逾期未按要求完成限期治理任务的，报请有批准权的人民政府责令停产、停业、关闭；  　　（三）逾期未按要求改正环境违法行为的，依据相关法律法规的规定采取罚款、责令停产停业、暂扣或者吊销许可证等行政处罚措施，或者采取责令停止建设、责令停止试生产、强制拆除、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或者代为处置等行政强制措施；  　　（四）逾期拒不缴纳排污费的，依法予以处罚，并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产停业整顿；  　　（五）逾期未履行或者未落实本办法第六条所列的行政处罚、行政命令等具体行政行为，严重污染环境或者造成重大社会影响的，依照有关规定进行挂牌督办或者暂停审批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已经实施挂牌督办或者暂停审批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的，不予解除；  　　（六） 国有企业或者国有控股企业逾期未履行或者未落实本办法第六条所列的行政处罚、行政命令等具体行政行为的，依法移送监察机关追究相关人员相应责任；  　　（七）当事人或者相关责任人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第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将环境行政执法后督察情况以及相关处罚或者处理情况向商务部门、工商部门、监察机关、人民银行等有监管职责的部门或者机构通报。  **第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职责范围内向社会公开拒不执行已生效的环境行政处罚决定的企业名单。  **第十二条** 后督察人员在环境行政执法后督察过程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第十三条** 对下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作出的环境行政处罚、行政命令等具体行政行为，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按照本办法的规定对其执行情况进行后督察，并将督察情况、存在问题、处理意见等及时向下级  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反馈，同时责成下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依法进行处罚或者处理。必要时，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向相关地方人民政府进行反馈，或者联合纪检监察机关进行调查，追究有关责任人的行政责任。  　　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开展环境行政执法后督察的，应当在具体行政行为执行期限届满后进行，并不受本办法第五条规定的60日期限限制。  **第十四条** 本办法自2011年3月1日起施行。 |